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소 관 부 처 : 환 경 부

제 정 1996.12.30 법률 제 5224 호

[시행일 : 1997년 12월 31일]

제 1 조(목적) 이 법은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생활공간”이라 함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하역사·지하도상가등 지하시설의 생활공간을 말한다.
2. “공기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스·입자상·부유물질등에 의하여 표시되는 공기의 상태를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부유물질등으로서 환경부령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지하생활공간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신선한 외부공기를 유입하여 지하생활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로서 중앙공기조화설비·국소배기설비

및 그 부대설비등을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지하생활공간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내부에 장치되어 있거나 환기설비와는 별도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대상 지하시설) ①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지하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시설을 말한다.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하건물에 부속된 지하층의 시설을 제외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시설외의 지하시설(지하보·차도 및 터널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에서의 쾌적한 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지하공기질권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준이 유

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조(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 공기질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 5 조(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유지기준의 설정)

① 지하생활공간의 쾌적한 공기질의 유지를 위한 기준(이하 “지하공기질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공기질기준보다 엄격한 지하공기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공기질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6 조(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등)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시설(이하 “지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이하 “환기설비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하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지하공기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7 조(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오염의 정도가 지하공기질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하시설의 관리자에게 공기오염의 정도를 지하공기질기준이하로 유지하도록 환기설비등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제 8 조(보고 및 검사등) ①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하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지하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지하공기질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지하공기질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 9 조(권한이 위임)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청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설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 11 조(과태료) 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하공기질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출입·검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 12 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은 벌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지하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설비등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설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안

제 1 조(목적) 이 영은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지하시설의 규모)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모든 지하역사
2.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관리자가 다른 경우로서 연속되어 있는 2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 3 조(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등)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이하 “중앙공조

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설비를 말한다.

1. 공기 흡입구 또는 배출구는 빗물 또는 먼지등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2. 공기 흡입구 또는 배출구에 설치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저하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풍도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일 것
4. 설비용량은 평상시와 비상시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고장·정비시에 대비할 수 있는 환기방식 등 필요용량을 확보할 것
5. 공기 흡입구와 배출구의 위치 및 구조는 실내에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기류가 부분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공기 흡입구와 배출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직접 흡입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지상 2미터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것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시설에 중앙공조설비 이외의 냉난방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열기의 더운공기나 연소기기의 배출가스가 지상으로 방출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인접상가등에 소음·매연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설비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제 4 조(보고) 지하시설의 관리자는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유지·관리실태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권한의 위임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등의 명령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과태료의 부과)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환경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중위생법시행령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의 지하상가”중 이 영의 적용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공중위생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로서 제3조의 환기설비등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내에 설비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공조설비를 신설하거나 전면대체하는 경우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3년이내에 요건을 적합하게 보완하여야 한다.

④(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특례) 기존의 지하시설로서 장소의 제한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흡·배기구 높이를 2미터이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의 공기유입으로 인한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기존의 환기설비등을 보완함으로써 흡·배기구의 높이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안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지하생활공간의 공기오염물질)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

다)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 3 조(지하공기질기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생활공간의 쾌적한 공기질의 유지를 위한 기준(이하 “지하공기질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제 4 조(환기설비등의 유지·관리기준)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이하 “환기설비등”이라 한다)의 유지·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하공기질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동할 것
2. 예비설비가 항상 운영가능하도록 유지·정비할 것

제 5 조(개선기간)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설비등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개선명령의 내용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의 관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6 조(개선명령에 포함할 사항)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선계획서의 제출
2. 개선 및 대체의 기간
3. 개선완료보고서의 제출
4. 기타 개선·대체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개선계획서의 제출등)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지하시설의 관리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 지하공기질기준 초과사유 및 대책
2. 환기설비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명세 및 설계도
3. 공사기간 및 공사비

제8조(보고) ①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시설의 관리자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시설의 관리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중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 측정결과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공간공기질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측정된 것이어야 한다.

③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지하공기질 검사기관) 법 제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지방환경관서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별 표

[별표1] 지하공기오염물질의 종류(제2조 관련)

1. 먼지
2. 황산화물
3. 일산화탄소
4. 이산화탄소
5. 질소산화물
6. 포름알데히드
7. 석면
8. 라돈
9. 카드뮴
10. 크롬
11. 비소
12. 구리
13. 납
14. 수은

[별표 2] 지하공기질기준(제3조 관련)

항 목	기 준
아황산가스(SO ₂)	1시간 평균치 0.25ppm이하
일산화탄소(CO)	1시간 평균치 25ppm이하
이산화질소(NO ₂)	1시간 평균치 0.15ppm이하
미세먼지(PM-10)	24시간 평균치 150 μ g/m ³ 이하
이산화탄소(CO ₂)	1시간 평균치 1000ppm이하
포름알데히드(HCHO)	24시간 평균치 0.1ppm이하
납(Pb)	24시간 평균치 3 μ g/m ³ 이하

[별표3] 지하시설관리자의 보고사항(제7조제1항 관련)

업 무 내 용	보고횟수	보 고 기 일
1. 관리대상 지하시설의 일반현황, 환기 및 공기조화설비 현황, 관리대상 지하 시설의 증감사항, 환기설비등의 기능·방식의 변경사항 등	연 2회	반기 종료후 10일 이내
2.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측정 결과	연 2회	반기종료후 10일 이내

비고 : 새로이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그 지하시설관리자는 시설이 완료된 이후 3월이내 그 사항을 최초 보고하여야 함

[별표 4]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보고사항(제7조제3항 관련)

업 무 내 용	보고횟수	보고기일
1. 관리대상 지하시설의 일반현황, 환기 및 공기조화설비 현황, 관리대상 지하 시설의 증감사항, 환기설비등의 기능·방식의 변경사항 등	연 2회	반기종료후 20일 이내
2.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측정 결과	연 2회	반기종료후 20일 이내
3.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연 2회	1분기 및 3분기 종료후 15일 이내
4. 지하생활공간공기질 오염사고의 발생 및 조치사항	수시	사고발생시

별지 제1호 서식]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현황

(시설명 :)

1. 일반현황

주 소		전화번호	
연 면 적	m ²	거 주 자 수 (상근자 포함)	명
준 공 일		일일이용객수	명/일
설치(소유)자			

2. 환기 및 공기조화설비 현황

가. 시설현황

내 용	세 부 내 역						
- 환기설비 설치내역	구 분	위 치	규 격	송풍기 용 량 (Hp)	급기량 (m ³ /h)	배기량 (m ³ /h)	가 동 시 간
	자 연 환 기						
	기 계 환 기	개 별 식					
		중 앙 관 리 식					

내 용	세 부 내 역
<p>－. 공기조화설비 설치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방시설 (시설별 용량 및 대수) ○ 난방시설 (시설별 용량 및 대수) ○ 습도조절 장치 (시설별 용량 및 대수) ○ 기타시설 (시설별 용량 및 대수) 	
<p>－. 공기정화시설 설치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진(제진)시설 (시설별 용량 및 대수) ○ 세 정 탑 (시설별 용량 및 대수) ○ 기 타 시 설 (시설별 용량 및 대수) 	
<p>－. 공기흡입구</p>	<p>지상고 : m(방향 : 도로측, 보도측) 먼지유입 가능성 : (있음, 없음)</p>
<p>－. 공기배기구</p>	<p>지상고 : m(방향 : 도로측, 보도측) 먼지유입 가능성 : (있음, 없음)</p>

나. 운영관리현황

시 설 운 영 관 리		자체운영관리, 위탁관리 ○ 위탁관리일 경우 위탁관리업체명 :			
여 과 필터 관 리		청소주기 : 수시, 일1회, 주2회, 주1회, 월1회, 교체시, 기타 교체주기:			
청 소	종 류	바닥물청소	왁스청소	닥트청소	
	주 기				
시 설 관 리 인		유·무 : 자 격 :			
시설점검일지 작성 여부		유·무 : 점검주기 :			
지하 공기 측정 관련 사항	측 정 대 행 여 부 (외 부)	대행기관 위탁(상호명 :)			
	측 정 기 관 (시·도 보건환경 연 구 원 또는 대행기관)				
	측 정 지 점 수	개			
	측 정 시 기	년/ 회			
	측 정 후 시 정 조 치 여부	유·무			

3. 변경사항

가. 시설의 변경사항(증감사항 포함)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나. 환기설비등의 기능·방식 및 운영관리상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주) 제2호 환기 및 공기조화설비 현황에 포함된 각 항목의 내용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기재

